

# 평창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
----------	----

제출년월일 : 1999년 5월 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를 경감하여 관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 부실화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며,
- IMF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를 활성화하고자 별장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된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의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으로 경감함(안 제14조)
- 나.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이 감면되나 휴폐업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음으로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대체입주업체를 지원함(안 제27조)
- 다. 별장중과세율을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여 일반세율로 조정함(안 제2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강원도준칙(세회13400-529, '99.3.15)호  
강원도준칙(세회13400-138, '99.1.18)호  
강원도준칙(세회13400 -41, '99.1.7)호
-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99.4.1. ~ 4.20)중 의견없음
-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바. 조례-규칙 심의회 : 제9회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99.5.4) 원안가결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1년12월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50을 경감한다.

### 1. 평창농공단지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강원도평창군내 별장에 대한 감면)강원도평창군내에서 소유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별장에 해당되어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2001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1목 및 ~~제234조의16제1항을 적용한다.~~

1. 강원도평창군내에서 소유(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

2.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등의 목적으로 강원도평창군내에서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제4장 제14조 내지 제15조를 제15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제5장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9조로 한다.

제6장 제19조 내지 제26조를 제20조 내지 제27조로 한다.

제7장 제27조 내지 제31조를 제29조 내지 제33조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4월30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물 대비표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p>
<p>&lt;신설&gt;</p>	<p>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50을 경감한다.</p> <p>·1. 평창농공단지</p>
<p>&lt;신설&gt;</p>	<p>제28조(강원도평창군 별장에 대한 감면)강원도평창군에서 소유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되어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2001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1목 및 제234조의16제1항을 적용한다.</p>

## 실 · 구조물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설&gt;</p>	<p>1. 강원도평창군에서 소유(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p> <p>2.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등의 목적으로 강원도평창군에서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공동주택을 포함한다)</p> <p>제4장 제14조 내지 제15조를 제15조 내지 제16조로 한다.</p> <p>제5장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9조로 한다.</p> <p>제6장 제19조 내지 제26조를 제20조 내지 제27조로 한다.</p> <p>제7장 제27조 내지 제31조를 제29조 내지 제33조로 한다.</p>

3/103  
4/11  
강원도

원 도

7  
1999. 3. 15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공의동 15 / 전화(0361)256-3009 / 전승(0361)349-4081  
 세무회계과 과장: 조길수 담당: 강영희 담당자: 김태영

문서번호 세회 13400-529  
 시행일자 1999. 3. 15. (년)

결 유

수 일 수신처 참조

참 조 세무(세정·재무)과장

산 본 장	5/11	지 시	
일 자	1999. 3. 15	결 재	부과장영
번 호	3/103	재 무 과 장	조길수
처 리 과	재무과	김 태 영	김태영
담 당 자			

계 목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통보

1. 세회 13400-41(99.1.7)호 및 령번서 세무 13400-143(99.1.21)호와 관련입니다.

2. 별첨용 부동산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자 일관성과 신빙성 강원도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의 의거 따르 불일치 같이 추가되었으니 지방의회와 의견을 거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 일 : 강원도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들.

강 원 도 시



권결 자치지원국장

수신처: 마(01-18)

## 강원도○○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강원도○○시(군) 별장에 대한 감면) 강원도○○시(군)에서 소유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되어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1목 및 제234조의16제1항을 적용한다.

1. 강원도○○시(군)에서 소유(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
2.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등의 목적으로 강원도○○시(군)에서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902
시행일자	1999. 1. 18.
경유	세무(세정·재무)과장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세무(세정·재무)과장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출선 참여합니다"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전화(0361)249-2881 / 전승(0361)249-4029  
 세무회계과 과장 : 조광수 담당 : 강명희 담당자 : 김태영



문서번호 세회 13400 ~ 1380  
 시행일자 1999. 1. 18. (년)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세무(세정·재무)과장

선결	과 장	강명희	지	세무(세정·재무)과장
접	일자	99. 1. 18.	시	강원도 (춘천시) 세무(세정·재무)과장
수	번호	137	결	부과담당
처	리	과	재	작성담당
담	당	자	공	검부담당
			람	당부담당
				관리담당

제 목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통보

1.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시군별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감면세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농공단지는 시군의 실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 안에서 판단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강 원 도 지

전결 자치지원국장 박수준



수신처 : 더(01 - 18)



#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자료

## □ 조례개정사유

감사원 육일 16330-207('98.10.24)호로

-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이 감면되나
- 휴·폐업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 부실화된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활성화 대책마련 요구와 관련됨

현재 지방세법 제276조에서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려면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함이 원칙이나
-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할 경우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까지 감면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고
- 또한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감면조치가 없이도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확대 필요성이 없는 농공단지까지 감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감면 필요성이 있는 농공단지를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공단지
2. ○○농공단지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적용요령

1. 각호에 규정하는 농공단지의 휴·폐업 업체가 증가하여 농공단지 활용화 대책이 필요한 농공단지를 선별하여 열거 규정함.
2. 감면대상 기한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기한으로 정하되 3~5년 이내로 함.
3. 감면기한은 대체입주자의 감면기한인 5년 범위안에서 정함.

# 강 원 도

PP. 1-7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전화(0361)56-9009/전송(0361)249-4029  
 세무회계과 과장 :                      세정담당 : 강명희    담당자 : 김태영

문서번호 새회13400-4  
 시행일자 1999. 1. 9. (   년)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세무(세정·재무)과장

선	결			지	시		
접	일	1999.		결			
	시			재			
수	간			·			
	번			공			
	호			람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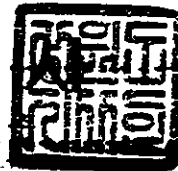
1. 행자부 새제 13400-334('98.12.30)호와 관련임.

2. 지방세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감면조례상의 해당조항을 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붙 임 : 시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글.

## 강 원 도 지

전결 자치지원국장 박수



추신처: 띄 (01 - 18)

##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등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소재 주택에 대하여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별장증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등과 같이 주택경기 부양 필요성이 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군에서 허가요청시 수용 방침임

**"합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평 창 군**

우232-800 / 강원 평창 평창 하리210-2 / TEL (0374)330-2296 / FAX(0374)330-2593  
재무과(본청1층) 과장:신영선 지방행정주사:김두장 담당자:정유진(cksea99@netsgo.com)

문서번호: 재무 13400 - PP6

시행일자 1999. 4. 1<sup>o</sup>

경유

발음 내부 결재

참조

취급		군	수	
보존				
부군수	전 결	76242 /		
과 장	신영선			
기안	김유진	부과담당자	신영선	협조

**제목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99. 4. 1 - 4. 20(20일간)
2. 예고방법 : 평창군보 게재, 군, 읍·면 게시판 공고
3.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 붙임 : 1. 읍·면 예고 결과 1부.  
2. 군보 사본 1부. 끝.